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2007. 5. 1 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설계,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및 감리업 무 수행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지침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등 안전 확인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로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제1항에 규정된 자로 제7조 규정에 의해 전문가 명부에 포함된 구조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 ③ "구조설계도서"이라 함은 구조계획,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구조분야)를 말한다.
- ④ "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재·가로재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제4조(구조안전 확인주체 등) ① 「건축법」 제19조 1항과 「건축사법」 제2조 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주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구조계획, 구조설계, 구조계산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4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는 규모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관련도서외에 구조안전확인서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3층이상 ~ 5층이하의 건축물은 [서식1]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 2. 6층이상 ~ 10층이하의 건축물은 [서식2]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 3. 11층이상 ~ 15층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 5,000㎡이상(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서식3]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서식1]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에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는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측량 및 지상물 조사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착공신고시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심의조건등에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구조안전여부의 확인) 허가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제출서류 및 내용과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비치) ①이 지침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성된 명부를 전국 단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는 대학교,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한국건축가 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및 구조관련학회등의 추천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를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민원인등 관계자가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계전문가 명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공신고 제출서류 등)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설계도면의 내력부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감리자의 확인 등) ①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설계도서의 현장비치,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및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전까지 공사용도면에 대한 구조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허가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공사(「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관계전문기술자등에게 구조안전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최초 감리 중간보고서에 내진 등 구조안전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 대행 건축물의 확인)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구조안전등의 확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 및 운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서식 1]

| 구조안전 확인서 | | | | |
|--|--|----------------------|----------------------|---|
| 1) 공 사 명 | | | | |
| 2) 대지위치 | | | | |
| 3) 용 도 | | | | |
| 4) 규 모 | 연 면 적 | m ²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 | | |
| 6)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 |
| 7) 내진설계 주요결과 | | X 방향 | Y 방향 | |
| | 밀면전단력 | V _x = | V _y = | |
| | 최대층간변위 | Δ _{x-max} = | Δ _{y-max} = | |
| 8) 특이사항 ¹⁾ | | | | |
| <p>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저에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설계자 : 건 축 사 0 0 0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 소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연락처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또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관계전문기술자 : 0 0 0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 소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연락처 :</p> | | | | |

참고사항 : 1)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서식 2]

| 구조안전 확인서 | | | | |
|--|--|-------------------------------|--------------------|------------|
| 1) 공 사 명 | | | | |
| 2) 대지위치 | | | | |
| 3) 용 도 | | | | |
| 4) 규 모 | 연 면 적 | m^2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 | | |
| 6) 지반조건 ¹⁾ | 허용지내력 | | 지하수위 | |
| 7) 풍하중 개요 | 기본풍속 | $V_0 =$ (m/sec) | 노풍도 | A, B, C, D |
| | 가스트계수 | $G_f =$ | 중요도계수 | $I_w =$ |
| 8)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 |
| | 해 석 법 | 등가정적해석법 , | | 동적해석법 |
| | 중요도계수 | $I_E =$ | 반응수정계수 | $R =$ |
| 9) 내진설계 주요결과 | X 방향 | | Y 방향 | |
| | 밀면전단력 | $V_x =$ | $V_y =$ | |
| | 최대층간변위 | $\Delta_{x-max} =$ | $\Delta_{y-max} =$ | |
| 10) 관계전문기술자자격 ²⁾ | | | | |
| 11) 특이사항 ³⁾ | | | | |
|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저에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설계자 : 건축사 0 0 0 ① | |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① | | |
| 주 소 : | | 주 소 : |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

참고사항 : 1) 지반조건 및 지반종류등은 필요시 표준관입시험등 허가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경될 경우 착공시 보완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
 3)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등에 관한 사항

[서식 3]

| 구조안전 확인서 | | | | |
|--------------------------|--|---|--------|--------------------|
| 1) 공 사 명 | | | | |
| 2) 대지위치 | | | | |
| 3) 용 도 | | | | |
| 4) 규 모 | 연 면 적 | m^2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 | | |
| 6) 지반 및 기초 ¹⁾ | 허용지내력 | | 지하수위 | |
| | 기초구조 | | 파일 유무 | 유, 무 |
| 7) 풍하중 개요 | 기본풍속 | $V_0 =$ (m/sec) | 노풍도 | A, B, C, D |
| | 가스트계수 | $G_f =$ | 중요도계수 | $I_w =$ |
| 8) 풍하중 해석결과 | | X방향 | | Y방향 |
| | 최고층 변위 | $\delta_{x-max} =$ | | $\delta_{y-max} =$ |
| | 최대 층간변위 | $\Delta_{x-max} =$ | | $\Delta_{y-max} =$ |
| 9)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 |
| | 해 석 법 | 내진설계 범주 (A , B , C , D) | | |
| |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 | |
| | 중요도계수 | $I_E =$ | 건물유효중량 | $W =$ |
|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 | X방향 | | Y방향 |
| | 횡력저항시스템 | | | |
| | 반응수정계수 | $R_x =$ | | $R_y =$ |
| | 초과강도계수 | $\Omega_{ox} =$ | | $\Omega_{oy} =$ |
| | 변위증폭계수 | $C_{dx} =$ | | $C_{dy} =$ |
| 허용층간변위 | $\Delta_{ax} =$ | $(0.010 h_s , 0.015 h_s , 0.020 h_s)$ | | |



2006년 12월 11 일 입법예고 공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제한함(안 제8조의3)
- 다.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점검도 그 결

- 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의3), 유지관리업자에 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제2항)
- 라. 법 제16조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6조)
- 마. 시설물 보수·보강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보수·보강기술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수·보강기술 인증사업 등 공적기능을 추가함(안 제29조)
- 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설립근거를 둠(안 제32조의2)



대통령령 제 19805 호(2006.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
| 고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3. 주요내용

라.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 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

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2)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20070111 시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안전진단 기술수준 향상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하여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규정을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부실진단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진단업체 또는 관리주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5일 이내)
- 평가심의 점수 산정을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해 5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 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요약〉

제2조(적용범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1.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또는 붕괴가 발생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시설물 규모에 비해 안전진단이 단기간으로 수행되는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이고 완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인 경우

마.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제8조(평가세부사항)

- 가.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해석·평가 등의 적정성
- 마. 구조해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 바. 추가조사 항목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 아. 상태평가등급 및 안전성평가등급 등 시설물 종합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 차.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 카.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제16조(심의의결 등)

③ 평가결과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의,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주의 : 당해 진단결과에 결함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2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기준

1. 3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60점 미만 51점 이상
2. 6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50점 이하 41점 이상
3. 12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40점 이하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 한 글 | | 한 자 | 영 문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자택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주 소 (-) | | |
| 직장 | 직장 및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주 소 (-) | | |
| E-Mail | | | |

20 년 월 일

※ 작성하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Fax : (02)566-4729 / E-Mail : ksea@ksea.●r.kr